
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창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: 2011. 10. 28.

발 의 자: 강창일 · 최규성 · 장세환
이낙연 · 조정식 · 오제세
유성엽 · 유선호 · 노영민
조영택 · 김성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의 감정평가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감정평가 의뢰자의 이해가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.

실제로 국가청렴위원회(2007년,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방안)도 감정평가업무가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.

이에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객관성·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3항,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재감정평가의 대상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지도·감독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2조(지도·감독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⑤ 제3항, 제4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재감정평가의 대상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